

오정 해모로 스마트시티 입주자모집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 2025.08.29.(금)]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오정 해모로 스마트시티 견본주택」내 분양 상담전화(☎032-325-6055)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입주자모집공고일 2025.08.29.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단지주요정	단지주요정보							
주택유형	해당지	역	기	규제지역 여부				
민영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8 <i>2</i> 9.)	현재 경기도 부천시 거주자	수도권(경기도,서울특	비규제 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	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1년	없	0	미적용	민간택지			

2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5.09.08.(월)	2025.09.09.(화)	2025.09.10.(수)	2025.09.16.(화)	2025.09.18.(목)~2025.09.20.(토)	2025.09.29.(월)~2025.10.01.(수)
방법	(PC·모바일) 청약홈(09:00~17:30)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PC·모바일)청약홈(09:00~17:30) • (현장접수)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오정 해모로 스마트시티견본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1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부천시 원도심재생과 10823호(2025.08.28.)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경기도 부천시 오정동 613번지 일원
- 공급규모: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5층 3개동 총 200세대[조합 153세대] 중 일반분양 47세대 [특별공급 21세대(신혼부부 12세대, 노부모부양 1세대, 생애최초 8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7년 07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고근대산	

_ <	- 이번에						(471.111, 7111)										
	T CII		주택형	Ohii	쥐	택공급면적(m²)	기타		. 11=1144	太ココ					일반 :	최하층
곤	주택 리번호	모델	(전용면적 기준)	약식 표기	주거 전 용 면적	주거 공용면 적	소계	공용면적 (지하주차 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고급 세대수	우선배정 세대수
202	25000251	01	042.9802A	42A	42.9802	17.7474	60.7276	39.4969	100.2245	24.6310	47	12	1	8	21	26	4
					-	합계					47	12	1	8	21	26	4

■ 공급금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위 : 세대, 원)					
주택형		케다	분양가격		계약금(5%)		중도금(60%)					エトゴ/フ ፫Ი/\		
(약식	층 7분	해당 세대	대	T 7 7		1차	2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잔금(35%)
표기)		수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계약후 1개월 이내	2025.11.17	2026.02.16	2026.05.15	2026.08.17	2026.11.16	2027.02.15	입주 지정일
	2층	4	95,467,400	263,432,600	358,900,000	5,000,000	12,945,000	35,890,000	35,890,000	35,890,000	35,890,000	35,890,000	35,890,000	125,615,000
	3층	4	97,542,200	269,157,800	366,700,000	5,000,000	13,335,000	36,670,000	36,670,000	36,670,000	36,670,000	36,670,000	36,670,000	128,345,000
42A	4층	4	99,590,400	274,809,600	374,400,000	5,000,000	13,720,000	37,440,000	37,440,000	37,440,000	37,440,000	37,440,000	37,440,000	131,040,000
	5~9층	19	102,676,000	283,324,000	386,000,000	5,000,000	14,300,000	38,600,000	38,600,000	38,600,000	38,600,000	38,600,000	38,600,000	135,100,000

■ 분양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아파트 분양금액	우리은행	1005-204-553365	오정613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외2)

10-15층 | 16 | 103,686,800 | 286,113,200 | 389,800,000 | 5,000,000 | 14,49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

- ※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상기계좌로 납부하여야하며,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01동 0203호 당첨자의 경우 인 납부계좌 입금 후 입금증 견본주택 제출 [견본주택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 ※ 분양대금의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은 약정된 납부일에 상기 납부계좌에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등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 조치한니다.
- ※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5항 등에 따라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예정입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 ※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격

■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공공)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 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 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적용횟수제한없음				
이력 배제)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 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 청 가능(혼인 전 처분 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 에 한하여 적용가능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 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 에 한하여 적용 가능				
	다자녀가구,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 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제3항 (출산특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공공)	*기존주택처분조건: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1.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2.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 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 산특례 적용 불가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 하지 않음 특례 적용 불가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 할 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기액 산정**

- 없습니다.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 유의사항

구분	내용					
	규칙」제36조제1 ※ 특별공급은 무주 처리됩니다. 다민	호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 택세대구성원에게 1가구 1주택 기준으	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			
		구분	처리방법			
고그리조	당천	엄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 발표일 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 발표일 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공급기준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중복당첨된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관추천/다자녀가구/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무주택세대주 요건 					
무주택 요건	가. 주택공급신청 나. 주택공급신청 다. 주택공급신청 라. 주택공급신청 재되어야함 마. 주택공급신청 - "무주택세대구성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다 다의 배우자 다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다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다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공급신청 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함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자되어야함			
	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다자녀가구/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전승단적 ONT 에이 구역장에 전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 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일반공급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경기도부천시또는수도권 (경기도,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에거주하는만19세이상인분또는세대주인미성년자(자녀양육,형제자매부양) • 순위별청약통장자격요건을만족하는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신청자의청약통장자격요건을갖추어야합니다 1순위 ① 청약예금:해당주택에신청가능한청약예금에가입하여 12개월이경과하고,지역별·면적별예치금액이상인분 ② 청약부금:청약부금에가입하여 12개월이경과하고,매월약정납입일에납부한월납입인정금액이예치금액이상인분 (전용면적 85㎡이하주택형에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가입하여 12개월이경과하고,지역별·면적별예치금액이상인분 - 2순위:예치금액과관계없이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가입한분
유의 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①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요건

(CHOI : m2 HILH)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천시 및 기타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5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감리회사 현황

	-		
구분	상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주체	오정613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121171-0007794	경기도부천시오정구오정로212번길 14,4층(오정동)
시공회사	㈜HJ중공업	180111-0602507	부산광역시영도구태종로233(봉래동5가)

	구분	건축감리	전기소방 및 정보통신 감리		
_	회시명	마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동화이엔씨		
	감리금액	796,981,900	374,000,000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액 및 중도금대출안내 등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내용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12025-101-0003400 호	₩ 11,681,020,000원	해당주택사업의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또는당해사업장의 <i>공</i> 동주택전부에대한동별사용검사포함)까지

■ 계약자 중도금대출 안내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 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

-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정부정책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 대출방식포함),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여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 진행시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중도금 60% 범위 내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중도금 대출 이자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월상환 대출이자를 분양계약의 정상적 이행조건하에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고, 입주 시 사업주체에게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 이자를 일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 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이자후불제 융자 등 판촉조건에 상응되는 조건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 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공고와 분양계약서상 내용이 상이할 경우 분양계약서를 우선 적용합니다.
- 견본주택: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61, 지하1층 사업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613번지 일원
- 홈페이지: www.오정해모로스마트시티.com

총 200세대 중 47세대 일반분양(42㎡A)

032)325-6055